



2020년

## 남양주시체육회 특정감사 결과

---

###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0. 11. 30. ~ 12. 4.(5일간)
- 감사범위 : 2019. 1. 1. ~ 2020. 10. 31.

### □ 감사결과 : 지적건수 7건

행정상	시정 3건 주의 4건	재정상	추금 1건	신분상	
-----	----------------	-----	-------	-----	--

※ 재정상 조치 : 1건 / 000,000원(추금 000,000원)

---

감 사 관  
(감 사 팀)

# I. 감사실시 개요

---

## 1. 감사배경 및 목적

남양주시체육회(주관부서 : 체육과)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경기도체육회 규정」에 따라 조직되었으며, 체육운동을 범 시민화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시 및 국위선양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남양주시체육회는 2020년 (보조금 사업)예산액이 30억원(2019년 : 26.7억 원)으로 보조금 사업의 종류 및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무를 비롯한 계약직(2), 일반직(12) 및 기간제(13)로 구성된 직원은 총 27명에 이르고 있다. 시 재정(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남양주시체육회의 재정낭비, 비효율 및 사업 타당성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2020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 2. 감사 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에서는 남양주시체육회의 운영 타당성 및 정책 효과성 검토, 보조금 선정심사 및 보조단체 선정 적정여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의 타당성 여부, 보조금 집행의 적정여부, 종사자 채용·관리 적정여부, 보조금 유용 및 횡령 여부, 주관부서의 지도·감독 실태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 남양주시체육회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컨설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체육과(해당 보조금사업) 및 남양주시체육회에서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 3. 감사실시 과정

감사에 앞서 기존의 보조금 감사결과, 주관부서 논의사항 및 시민의견 수렴, 법령 및 자치법규 등 관련 자료를 사전 검토·분석하였으며, 2020. 11. 30.부터 동년 12. 4.까지 감사인원 6명을 투입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감사대상부서 및 남양주시체육회와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소명 기간을 거친 후 이를 검토하여 감사결과에 반영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 II. 감사결과

### 1. 남양주시체육회 현황(2020. 11. 30.기준)

#### □ 보조금 사업 현황

[남양주시체육회 본예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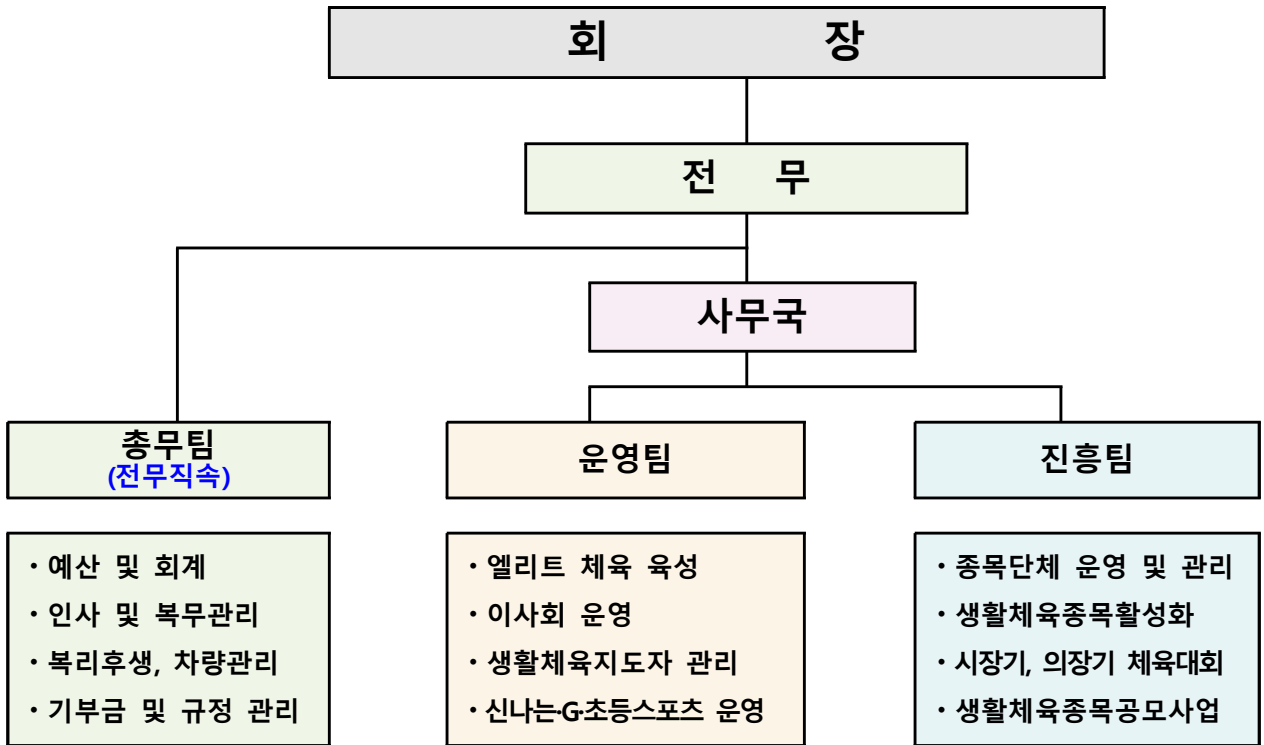
재원구분	사업명 (2020년 기준)	예산액(천원)	
		2019	2020
합계	총 28개 사업	2,676,542	3,034,012
시비보조금	남양주시체육회 육성지원 등 20개 사업	2,144,902	2,395,394
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운영 지도자 육성 등 4개 사업	129,500	123,700
도시비보조금	일반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등 2개 사업	20,108	81,190
국도시비보조금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2개 사업	382,032	433,728

#### □ 직원 현황

(정원 / 현원)

구분	계	전무	국장	팀장	사무직	운전	비고
계	15 / 14	1 / 1	1 / 1	4 / 3	8 / 8	1 / 1	지도자 (기간제) 13명 매체용 1명
총무팀	5 / 5	1 / 1	-	1 / 1	2 / 2	1 / 1	
사무국	10 / 9	-	1 / 1	3 / 2	6 / 6	-	

## □ 기구표



## □ 체육회 임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회 장	부회장	이 사	감 사	비고
계	48	1	8	37	2	

## 2. 감사결과 총괄

### □ 감사결과 요약

(단위 : 건, 명, 천원)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금액)				신분상 조치(명)		
계	시정	주의	개선 등	계	회수	추급	기타	계	징계	훈계
7	3	4		1 (000)	-	1 (000)	-			

감사결과 총 7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이 확인되어, 행정상 시정 및 주의 조치 하고, 재정상 0건 000,000원을 추급 조치토록 요구하였다.

7건의 지적내용 중 5건은 남양주시체육회의 운영(자체규정 등)에 관한 사항이며 2건은 보조금 규정 위반사항으로, 문제점이 발생한 남양주시체육회 자체규정에 대한 근본적 원인분석과 개정, 이해 및 준수가 필요하며, 체육회 소관 규정 전반에 대해 검토하여 상위법령에 어긋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고자 한다. 보조금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인 체육과와 남양주시체육회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규정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체육회 스스로 정기감사를 통해 자가점검 하여 시정·개선하도록 요구하고자 한다.

### 3. 감사결과 처분계획

#### □ 처분요구목록(본 처분 7건)

일련 번호	담당부서	제 목	조 치 구 분			비고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1	남양주시 체육회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소홀	시정	추급 000,000원		
2	남양주시 체육회	시간외 근무수당 운영 부적정	시정 (개선)			
3	남양주시 체육회	정기감사 미실시	시정			
4	남양주시 체육회	직원 채용규정(절차) 이행 소홀	주의			
5	남양주시 체육회	차량운행일지 작성 소홀	주의			
6	체육과 남양주시 체육회	종목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운영 부적정 -시장기 및 의장기 체육대회 개최지원 -생활체육종목 공모사업 -종목별 단체육성지원사업	주의			
7	체육과 남양주시 체육회	보조금 교부 및 관리, 정산 소홀 -초등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지원사업	주의			

### 3. 주요 지적 사항

감사결과 주요 지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b>1</b>	<b>시간외 근무수당 운영 부적정</b>	<b>NO. 2</b>
----------	------------------------	--------------

- 남양주시체육회 「보수 규칙」 제2장 시간외 근무에서 제5조(인정범위)에 따르면 지급액은 봉급기준액의 226분의 1의 10할내지 15할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체육회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무일을 기준으로 정직, 직위해제, 휴직,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및 결근 등을 제외한 월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자에 대하여 별도의 초과근무 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5시간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남양주시체육회 「보수 규칙」 제7조(시간외 근무대장 작성 및 지급)에 따르면 초과근무가 발생한 직원은 시간외 근무대장을 작성하여 보고하며, 총무팀 회계담당자는 시간외 근무대장에 의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남양주시체육회에서는 실제로는 「보수 규칙」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시간당 (시급단가\*1.5)의 금액으로 (최대인정시간 30시간) 지급하고 있으며, 월 15시간 정액 지급은 운영하지 않고 있다. 또한, 출퇴근 기록기를 도입한 2020년 6월 이후로 시간외(초과) 근무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초과근무명령부와 출퇴근 기록에 의해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수 규칙」의 규정과는 다르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 남양주시체육회 「보수규칙」 중 시간외 근무수당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과 남양주시체육회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 조치  
또한, 남양주시체육회 소관 규정 전반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에 대해 개선(개정 등) 하도록 “개선권고”

<b>2</b>	<b>직원 채용규정(절차) 이행 소홀</b>	<b>NO. 4</b>
----------	--------------------------	--------------

- 남양주시체육회 「인사 규정」 제10조(채용방법)제1항에 따르면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자격기준은 “별표2”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2 [직원채용 자격기준]의 지도자에는 생활체육지도자 및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 제13조(채용 결격사유)제6호에 따르면 ‘지도자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타 시·군·구 체육회에서 징계처분 등으로 사직한 사람은 지도자로 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35조(관리)제2항에 따르면 지도자의 관리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통합관리시스템(slims.sportal.or.kr)<sup>1)</sup>을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체육회에서는 2019년과 2020년에 생활체육지도자를 채용하면서 「경기도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 제13조(채용 결격사유)제6호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를 확인하여야 하나, 임용예정자가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사항만으로 타 시·군·구 체육회 활동 여부를 확인하였을 뿐, 타 시·군·구 체육회에서 징계처분 등으로 사직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남양주시체육회 규정」 제49조(사무국)제4항에 따르면 임원의 친족<sup>2)</sup>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으며,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9. 3. 7.)고 규정하고 있고, 「직제 및 정원규정」 제6조(사무조직)제3항에는 사무조직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무 직속으로 총무팀을 두고, 사무국에 운영팀, 진흥팀, 지원팀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체육회에서는 2019년과 2020년에 사무국 직원을 채용하면서 채용 공고문에 「남양주시체육회 규정」 제49조제4항에 따른 내용(임원의 친족은 사

1) 근무 규정 제35조(관리)에 따르면 생활체육지도자통합관리시스템에는 지도자의 인사정보 입력, 지도활동 실적보고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회에 따르면 지도자에 대한 징계처분도 시스템에 입력 관리하고 있음.

2) 체육회에 따르면 친족의 범위는 민법 777조(친족의 범위)를 준용하고 있음.

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을 명시하고, 임용예정자가 체육회 임원<sup>3)</sup>의 친족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남양주시체육회 「인사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b>3</b>	<b>종목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운영 부적정</b>	<b>NO. 6</b>
----------	------------------------------	--------------

- 남양주시체육회(이하 “체육회” 라 한다)에서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2호, 2019.11.6.)」 등 보조금 관계 규정에 따라 남양주시 체육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각종목단체 등에 보조금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및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에 따르면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는 「감사원법」 제25조에 따른 계산서, 증거서류 및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2020. 9월 기준 체육회 임원은 총 48명(회장 1명, 부회장 8명, 이사 37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 ②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에 따르면 보조금 교부신청 시에는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부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 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계획서에는 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실적보고) 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 사업을 완료 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 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같은 조례 제16조(정산검사)에 따르면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로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15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남양주시체육회가 시장기 및 의장기 체육대회 개최지원 보조금 지원 사업을 운영하면서 남양주시(체육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각 종목단체로 재교부하기 위해서는, 각 종목단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서를 받아야 하나, 신청서 접수 없이 매년 연초(1월~2월)에 개최하는 총회에 제출한 종목단체별 계획서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교부해온 사실이 있으며,
- 2020년 생활체육종목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 등 5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보조금 통장을 별도 개설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를 제외한 4개 단체의 경우 사업비에 자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자부담금의 예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또한, 체육회에서는 52개 종목단체 실무자의 원활한 사업 수행 및 종목단체 활성화를 위한 유류비 지원 사업을 하면서, 보조금 정산 시 각 단체에서 제출한 통장사본과 주유 시 영수증만으로 정산완료 하였는데, 유류비 지원에 대한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는 차량운행 목적, 운행거리, 주유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별도 조치 없이 정산을 완료한 사실이 있다.
- 아울러, 체육과에서는 보조금 정산 시 체육회가 보조금 관계 규정 및 절차에 맞게 공모사업 지원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지출 정산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하나 체육회가 보고한 그대로 정산 처리하는 등 정산 검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 4. 기타 지적 사항

감사결과 기타 지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소홀 (No.1)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양주시체육회 「보수 규칙」 제17조(자녀학비보조수당)에 따르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에게는 자녀 1명당 공무원 수당 규정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학비가 면제되거나 무상인 학교에 다니는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직원은 해당 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 취학자녀의 공납급 영수증 또는 납입 고지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부에서는 2019년 2학기(3분기)부터 고3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남양주시체육회에서는 고3학생을 자녀로 둔 직원(○○○)에게 1학기(1~2분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2학기(3~4분기)부터 지급하지 않았어야 하나, 1학기 1분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2분기 수당 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li> </ul>
<b>처분 요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과소 지급한 수당 000,000원 “<b>추급</b>” 토록 시정조치</li> </ul>
<b>2</b>	<b>정기감사 미실시</b> <span style="float: right;"><b>(No.3)</b></span>
<b>위법 부당 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양주시 체육회 「감사 규정」 제3조에 따르면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하고, 내부감사는 본회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를 말하며,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연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li> <li>그런데도 남양주시체육회에서는 「감사 규정」에 따른 정기감사를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li> </ul>
<b>처분 요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 규정을 준수 및 연1회 정기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b>시정</b>” 조치</li> </ul>
<b>3</b>	<b>차량 운행일지 작성 소홀</b> <span style="float: right;"><b>(No.5)</b></span>
<b>위법 부당 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육회 「차량관리 규정」 제5조(배차신청 등)에 따르면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고, 사무국은 배차신청의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신청부서로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8조(기록관리)에 따르면 사무국장은 차량 배차신청·승인서, 차량 운행일지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11조(운행종료)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운행 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인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li> <li>그런데도, 2019년부터 현재까지 차량운행일지의 작성내역을 확인한 결과 체육회에서는 차량운행일지 작성 시 출발시간과 도착시간 미작성, 금일소비량 미작성, 운전자 미작성에 대하여 별도 조치 없이 결재완료하였고, 전일 운행일지 작성 누락 등으로 인하여 유류잔량 및 운행거리 등에서 산정오류가 반복되는 등 차량운행일지 작성 및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li> </ul>
<b>처분 요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 규정을 준수 및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b>주의</b>” 조치</li> </ul>

4	<b>보조금 교부 및 관리, 정산 부적정</b> (No.7)
<b>위법 부당 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li> <li>•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 ③ 지방보조금 교부에 의하면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자부담이 있는 경우) 등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전에 사전 확인하여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li> <li>• 그런데도 남양주시체육회에서는 “초등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사업계획에는 전산구축비과 도체육회 운영비를 도·시비 예산으로 집행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도교육청(도교육청→도체육회로 예산 배정하여 직접집행) 예산에서 해당 예산(00,000천원)을 공제 후 예산을 교부하여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이에 보조금 변경사용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 집행계획을 변경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사전 승인 절차 없이 변경 집행하였고, ‘2019년 초등스포츠클럽 사업추진 실적 정산보고서 제출’ [남양주시체육회 지원팀-○○○ (2020. ○○.○○.) 호]에는 변경된 예산의 내용을 반영하여 정산처리 보고를 한 사실이 있다.</li> <li>• 또한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매칭사업(도교육청비 50%, 도비25%, 시비25%)으로 집행 완료 후 매칭비율로 남은 사업비를 반납하여야 함에도 강사비를 국비로 먼저 소진 후 정산보고 하고 집행 잔액은 시비로 세입처리 하였으며 『2019년도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사업 정산 확정 통보』(경기도 체육과-○○○○ (2020. ○○.○○.) 후 도교육청 집행 잔액 추가 반납분을 2020년 제○회 추경에 반영하여 반납 예산을 추가 확보 하는 등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li> <li>• 아울러, 남양주시체육회에서는 체육진흥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지원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9년도와 2020년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지원 사업(체육진흥기금)의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총 예산액만 기재하고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등 보조금 집행계획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체육과에서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전에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사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한 사실이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한 남양주시체육회에서는 지방보조사업 수행 시 사정의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2020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지원 사업(체육진흥기금)의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지급기준을 총 ○번 변경하면서 일부 변경사항만 시에 검토보고 하였을 뿐이고 이외에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남양주시체육회 내부적으로만 검토하고 이를 사전 변경 승인 절차 없이 변경 집행한 사실이 있다.</li> </ul>
<b>처분 요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규정을 준수 및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li> </ul>